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7. 8. 30. 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속 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8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4일

3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명시함(안 제2조)

나. 지원신청,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함
(안 제3조 ~ 안 제5조)

다.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6조)

라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.
- 개정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(능률증진을 위한 사항)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 기기·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- 따라서,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아 장애인공무원의 안전과 편의, 업무수행 능률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과 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지원대상에게 필요한 소요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.